



「2022년 10월29일 지방직 7급 시험」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및 해설(2)

| 김재준 교수 | 박문각남부고시학원

09. 「지방자치법」상 보조기관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교육훈련기관과 시험연구기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부시장과 부지사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보조기관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정답 : ④

【해설】

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소속 행정기관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 예컨대 사도에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한다.

10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 라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의결사항은 확정된다.
- ④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정답 : ②

【해설】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11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특별시·광역시와 도가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 중 공통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취득세 ㄴ.재산세 ㄷ.지방소비세
- ㄹ.지방소득세 ㅁ.주민세 ㅂ.지방교육세

- ① ㄱ, ㄴ, ㄹ ② ㄱ, ㄷ, ㅂ
- ③ ㄴ, ㄷ, ㅁ ④ ㄹ, ㅁ, ㅂ

정답 : ②

【해설】

보통세 중에서 취득세·레저세·지방소비세, 목적세인 지방교육세·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시·광역시와 도가 공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.

12.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 시기가 이른 것부터 빠르게 나열한 것은?

- 가. 지방분권추진위원회
- 나. 지방이양추진위원회
- 다. 자치분권위원회
- 라.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
- 마. 지방자치발전위원회

- ① 가→나→다→라→마
- ② 가→라→나→마→다
- ③ 나→라→가→마→다
- ④ 나→라→마→가→다

정답 : ③

【해설】

지방분권 관련 추진위원회 연혁: 지방이양추진위원회(김대중 정부) →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(노무현 정부) → 지방분권추진위원회(이명박 정부) +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(이명박 정부) → 지방자치발전위원회(박근혜 정부) → 자치분권위원회(문재인 정부)

13.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민은 사용료, 수수료, 부담금의 부과·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주민의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.
- ④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정답 : ①

【해설】
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(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.
1.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2.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부담금을 부과·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
3.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
4.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

14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고, 이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- ㄴ.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.
- ㄷ. 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- ㄹ.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
- ③ ㄴ, ㄹ ④ ㄷ, ㄹ

정답 : ④

【해설】

ㄱ.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고, 이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ㄴ.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.

15. 중앙지방협력회의법령상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가가 협력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른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.
- ②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이고 부의장은 시·도지사협의회 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다.
- ④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정답 : ④

【해설】

【해설】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.
③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의장과 국무총리이다.

16. 「지방자치법」상 분쟁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- ② 시·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.
-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정답 : ③

【해설】

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

※ 해설 내용은 개정된 법령(2022. 10월 기준)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지방자치론 자료 및 질문은 네이버카페 '김재준 행정학' 및 유튜브 '김재준 지방자치론TV'를 이용해 주세요.